

2025 경북 출산육아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사업 모집 (3차) 공고

경상북도와 KB금융,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도내 출산 육아 소상공인의 전기료 지원을 통해 친육아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 12.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작성 및 사업 관련 문의

- 전화번호: 1800-8730 메일주소: khw0191@gepa.kr

신청 기간 및 제출 방법

- 신청 기간 내 접수되어야 인정

- 접수 기간: 2025. 12. 15.(월) ~ 2026. 1. 9.(금) 18:00 마감 기한 엄수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마감기한 내 서류 접수 필수**

- 접수 방법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및 서명하여 경상북도 '모이소 앱'으로 접수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모이소 앱 다운로드" 검색, Google Play 스토어 혹은 App Store에서 "모이소" 검색하여 설치

- 신청서 다운로드

경북경제진흥원 '(www.gepa.kr)' → 지원사업 안내 → '전기료' 검색 → 모집공고
→ 붙임파일 다운로드

유의 사항

- 신청자 **본인**이 공고문을 확인·숙지하고 **자필 서명(전자서명) 후 신청**해야 하며, 공고문 및 첨부서류 미확인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1인 1건만 신청 가능, 다수 사업자 중복신청 불가(선정 취소)
- **1, 2차 수혜자는 전기요금 증빙 추가 제출 필요(공고문 9p 참조)**

선정 결과 통보

- 문자 발송 또는 모이소 앱 개별 통보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25 경북 출산 육아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사업 모집 [3차] 공고
	<input type="checkbox"/>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공고일 기준 6개월 전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신청대상 :	② 사업장 및 주소지가 경북도 내 소재할 것
	③ '17.1.1. 이후 출생한 자녀를 양육 중인 소상공인
	④ 중위소득 150% 이내
	⑤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 선정규모 :	도내 900개소 정도
○ 지원내용 :	2024년 전기요금(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거주용)에 대해 지원 한도(50만원) 내 지원
○ 접수 수 :	'모이소 앱' 통해 접수 ※ 본 공고의 '6.참고사항' 및 'QnA' 참고
○ 접수 마감 :	2026. 1. 9.(금) 18:00 기한 엄수
○ 참고사항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2. 지원대상

지원자격 관련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① 공고일 기준 6개월 전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 개업연월일 2025. 6. 15.까지 창업한 자, 사업자등록 기준
※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② 사업장 및 주소지가 **경북도 내** 소재
※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 주민등록등본상 (거주) 주소지 인정
- ③ '17.1.1. 이후 출생한 자녀를 양육 중인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출산 전 (출산 예정)인 소상공인은 미포함
- ④ 중위소득 150% 이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2025 기준중위소득'의 150% 혹은 중위소득 150%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판단
- ⑤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범위 미충족 시 지원 불가)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범위 미충족 시 지원 불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붙임2]평균 매출액 소기업 규모, [붙임3]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할 것.
- 용자 제외 업종 및 사치향락 대상 업종 [붙임1]사업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3. 신청방법

□ 추진절차

* 하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접수기간 : 2025. 12. 15. ~ 2026. 1. 9.(금) 18:00 마감기한 엄수



○ 검토기간 : 2026. 1월
※ 제출한 서류 확인 외에도 타기관 진위 여부 확인 등에 따라 검토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음



○ 선정 발표 : 2026. 1월 내
※ '모이소'에서 확인 가능, 선정자 개별 통보 예정



○ 지원금 지급시기 : 2026. 1월(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1월 내 지급)
※ 지원금 신청 접수순으로 지급되며, 서류 보완 필요에 의해 보류되는 지급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신청가능 계약종

- ①일반용, ②산업용, ③농사용, ④교육용, ⑤주택용 중 비거주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인 경우
※ 전기요금 "계약종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 파악이 어려운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여 "한국전력 콜센터(☎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 직접계약자 제출서류

-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납부내역(2024년 1~12월)

□ 비계약사용자 제출서류

- 월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2024년 1~12월 월별 고지서, 계좌이체 내역 등 '7. 제출 및 확인 서류' 참고)
 - ※ 2024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서를 합산하여 50만원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일체 제출, 50만원 미만일 경우 전기요금 영수증 일체

□ 공통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분리세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포함), 사업자등록증, 가구원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구원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혹은 소상공인여부 증빙 대체 서류), 통장 사본(대표자 명의)
- 기존 수혜자는 전기요금 합산 50만원 이상 납부 증빙서류 제출
 - ※ 신청 방법 및 유의 사항은 9p 참조

4. 선정

□ 선정기준 및 제외대상

- 선정대상 및 방법: 신청서 및 필수서류 구비 여부 등 신청요건을 충족한 출산 육아 소상공인을 신청 접수순으로 선정
- 선정제외
 - 신청요건 미충족(접수 기간 내 요청 서류 미제출자 포함)
 - 최근 1년 이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업자
- 발표시기: 1월 예상
- 통지방법: 문자 발송(신청서에 기재된 연락처)

5.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지급방법

- 지원자격 확인(서류 검토 등) 후 선정을 통해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에 지원금 지급
- 지원금액 최대 50만원(단, 전기료 합산금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별도 실 부담금만 지원하며 2024년 전기요금액만 합산함)
 - ※ TV수신료가 전기요금과 구분되어 표기된 경우, TV수신료 제외하고 지원됨

【전기요금 지원 절차】

소상공인(직접계약자)		진행원		진행원
'모이소' 어플 설치 및 신청	»	- 접수, 자격 검토, 계약자 일치여부 및 서류 확인	»	- 지원금 지급(일괄)
소상공인(비계약사용자)				
'모이소' 어플 설치 및 신청				

6. 참고사항

□ 제출 및 확인서류

- '제출 서류' 목록에 기재된 필요 서류는 모두 기한 내 제출해야 하며, '서식' 파일에 기재 및 서명하여 제출

※접수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사유로 미선정될 경우,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제출서류 준비 시 참고>

- 1) 소상공인확인서(문서제목: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서류를 인정,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인정하지 않음(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를 충족하지 않음)
 - 온라인: 중소벤처24 (www.smes.go.kr) 혹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 오프라인: 발급 불가
- 2) 건강보험 관련 서류
 - 온라인 :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 (minwon.nhis.or.kr), The건강보험(모바일App)
 - 오프라인 : 1577-1000(팩스 발급) / 지사 방문 /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 3) 기타 행정서류
 - 온라인: 정부24(www.gov.kr)
 - 오프라인: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 하단 QR코드를 통해 설치 또는 구글(앱)스토어 '모이소' 검색 후 설치



안드로이드 전용



아이폰 전용

7. 제출 및 확인서류

○ 필수서류 목록

※ 다운로드→프린트→작성→서명 후→'모이소' 앱으로 접수해야 신청 완료됨

제출서류	검토사항
신청서	[서식 ①]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도 가능
통장사본	사업신청자(업체 대표자)의 통장사본 ※ 선정될 경우, 해당 계좌로 지원금 지급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②]
주민등록등본	가족 구성원 전체 표시, 주민등록번호 미 표시 ※ 분리세대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같이 제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 있는) 가구원별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모두 제출 ※ 등본상 부모, 배우자 등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전원의 납부확인서 제출 ※ 배우자의 경우 등본에 없더라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소상공인 확인서 (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에서 출력
전기요금 납부내역	2024년 전기요금 납부내역 ※ 한전On(online.kepco.co.kr)에서 조회

○ 보완 서류(소상공인확인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①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주민센터 / 정부24 / 국민건강보험)
- ②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기간: 직전 사업연도 1~12월)

○ 보완 서류(전기요금 납부내역)

계약명의타인 (전기 단독사용 하지만, 타인명의)	한국전력 및 구역 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요금 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공식 발급받은 서류 일체(아래 목록 중 택1) - 전기요금 고지서(지류, 모바일, 알림톡 등) - 전기요금 납부확인서[서식 ③] - 계약정보 종합내역 - 전기요금 납부실적 증명서 - 기타 월별 전기요금 부과/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리비납부 (타인과 함께 사용, 전기요금 표기 별도 관리비고지서를 통해 납부)	관리사무소, 기타 원 계약자 등으로부터 관리비 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로서, 전기요금 확인이 가능한 서류 일체(아래 목록 중 택1) - 집합건물관리비 고지서 - 전기요금 납부확인서[서식 ③]
기타자율납부 (타인과 함께 사용, 별도관리비 고지서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으로 요금 분담)	- 관리비 연간 부과 현황 - 납부확인서, 영수증, 명세표, 청구서 등 - 기타 월별 전기요금 부과/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선택]	비계약사용자가 공동대표 사업장일 경우 [서식 ④] 파일 프린트 후 서명

- 가구원 증빙서류

	
<p style="text-align: center;">① 주민등록등본(필수)</p>	<p style="text-align: center;">② 가족관계증명서(선택)</p>
<p>등본상 현주소가 '경북'인 경우 지원대상이며, 대구 등 기타 지역의 경우 지원 제외 대상</p>	<p>등본상 배우자 또는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출</p>

□ [★필독★] 신청 관련 유의 사항

- 본 공고에 작성된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신 후 신청해주시기 바라며, 공고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 시 신청서식 및 증빙서류 일체를 빠짐없이 '모이소' 앱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상태 확인 및 누락·보완 서류 안내는 '모이소' 앱 → **소상공인** → **정책지원 내 '나의 신청 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완료 이후에도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누락·보완 서류는 신청기간 내에 추가로 제출하며, 제출 경로는 '모이소' 앱을 통해 '첨부 수정'으로 제출 바랍니다. 단, 신청기간 내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이후 추가 제출 서류 받지 않음)**
- 신청서 및 증빙서류는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화질·빛 반사 등의 이유로 내용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보완 요청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 발급과 관련된 안내는 해당 발급 기관으로 문의하셔야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서류 보완을 신청기간 내 완료한 경우 사업기간 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필독★] 기존 수혜자 신청 방법 및 유의 사항

전기요금 증빙 합산 금액	추가 제출 증빙서류
50만원 이상	없음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내역

- 신청 방법: '모이소' 앱 → 소상공인 → 정책 지원 → 기존 수혜자 추가 모집공고
 ※ 신규 신청자 공고에 작성하신 경우 수정 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하게 앱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만 메일을 통해 보완 제출 가능합니다.
- 기존 제출 전기요금은 '모이소' 앱 → 소상공인 → 정책지원 내 '나의 신청 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존 제출된 전기요금 증빙 합산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별도로 지급 안내 예정
- 기존 제출된 전기요금 증빙 합산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추가로 **전기요금 납부내역(50만원 이상)**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기존 제출된 전기요금 증빙자료의 합산 금액이 20만원 미만으로 일부 담금 지원을 받으신 수혜자 중 추가 제출이 가능한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1] 지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희주점업
56212	무도유희주점업
5812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표준산업분류	업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중인 부동산 중개및 대리업(68221)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붙임2]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연 평균 매출액
1. 식료품 제조업	C10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 임업 및 어업	A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50억원 이하
32. 도매 및 소매업	G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붙임3] 소상공인 기준

①연평균매출액 + ②월평균 상시근로자수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① (연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연매출액을 통해 소기업 여부 확인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신청서상 연매출액로 대체(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절차 준용)

②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까지이며, 「장애인기업지원자금」에 한하여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업종에 무관하게 10인 이상도 지원 가능

- 상시근로자수 산정 및 확인방법

구 분		내 용
산정기준	① 직전 사업연도 12개월 이상	직전 사업연도 1월~12월까지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② 업력 12개월 이상	최근 12개월간의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③ 업력 12개월 미만	창업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④ 업력 1개월 미만	산정일 현재 인원
확인서류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반기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등

* 산정기준 ①과 ②에 모두 해당할 경우, 기준 ①을 우선 적용

[붙임4] 중위소득 150% 이내 기준

중위소득 150%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2025)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589,000	127,230	58,386	-
2인	5,899,000	210,208	143,648	213,002
3인	7,539,000	271,459	221,206	277,028
4인	9,147,000	330,765	292,298	342,861
5인	10,663,000	386,684	357,963	407,092
6인	12,098,000	431,294	411,250	461,699
7인	13,483,000	506,004	496,008	552,230
8인	14,869,000	552,230	545,970	599,810
9인	16,254,000	599,810	591,277	673,463
10인	17,639,000	673,463	654,281	792,926

□ '가구원' 용어 정의

- 한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을 의미하여,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본인, 배우자, (조) 부모, 자녀, 형제, 자매를 확정 가구원으로 인정.
- 주민등록표 상 동일한 주소지에 살면서 세대만 분리된 경우는 동일 가구원으로 봄.
- 신청자의 배우자나 자녀는 신청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가구원에 포함해야 함.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소득이 있는 가구원(소득조회 대상에 포함됨) 외에 자녀 및 미성년 형제자매도 가구원 수에 포함
-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 수에 포함
- 소득이 있는 가구원 수는 가구소득인정액 확인을 위해 정확히 산정되어야 하며 개별 사례가 다양하고 복잡하니, 반드시 접수할 때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구비서류(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를 빠짐 없이 첨부해야 함.